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1036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채윤주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1. 7. 1. 접수 제10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9. 14. 원고와 사이에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일반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9. 1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등을 C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4.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2022. 3. 10.경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D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7. 8. C을 대위하여 D은행에 대출원리금 36,189,059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부부인 C과 피고는 2008.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30.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7. 1.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07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사이인 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은 무자력 상태인 C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은 C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와 피고는 1999. 12. 24. 혼인신고를 하고 2021. 8. 4.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그 혼인기간 중인 2008. 5. 2.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

②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은 C와 피고가 협의이혼 하기 직전 무렵인 2021. 6. 30.

이루어졌고, 곧이어 피고는 2021. 7. 15.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은 C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예정에 두고 그에 따른 부부공동재산 청산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즉, C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토지나 건물의 거래가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4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그 재산분할비율을 1:1로 정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그 가액 상당으로 본 2억 원(=4억 원×1/2)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C와 피고는 2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서,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으로 이익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C에게 그에 상응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별지